#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4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이연희·이광희·박상혁

허종식 • 이인영 • 김윤덕

김남희 • 문금주 • 임미애

송재봉 • 서미화 • 이춘석

한민수 · 정준호 · 이정문

이강일 • 복기왕 • 손명수

한준호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2.3 계엄 및 내란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동법의 '국군의 강령'과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계엄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계엄에 관련한 명령이나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하고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5조).

#### 법률 제 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법」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이거나 「형법」 제87 조에 따른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군인은 제2항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생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u> </u>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이거나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
				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명령을 거부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③ 군인은 제2항에 따라 명령
				을 거부한 이유로 인사상 불이
				<u>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u>